〈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 보 공 개 서

[(주)용마을 파육장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 .

[(주) 용마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소재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B동 701,702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2671-447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2672-554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기획팀 02-2671-4470]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5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9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0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6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2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3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5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36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 .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용마을	파육장 외 1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01,702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5.25.		1999.6.1.	이 영 찬	02-2671-4470	02-2672-5540
	법인등록번호	120111-0193524		사업자등록번호	122-81-5800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이 영 찬	파육장 외 1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01,702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6.1.~현재		이 영 찬	02-2671-4470	02-2672-5540
사용인 (이사)	이 채 원	파육장 외 1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01,702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6.1.~현재		이 영 찬	02-2671-4470	02-2672-554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인도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파육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파육장	명칭의 유래 : '파'는 대파를 의미한다. '육장'은 대중음식인 '육개장'을 의미한다. '파육장'은 대파를 주요 식자재로 한 최고급의 육개장 전문점을 의미한다.
상 호	파육장 00점	
상표(서비스표)	파육장 조선 육개장의 맥을 잇다	서비스표 출원번호: 제41-2013-0035995
광 고	파육장 조선 육개장의 맥을 잇다	서비스표 출원번호: 제41-2013-0035995
그 밖의 영업표지	파육장 조선 육개장의 맥을 잇다	서비스표 출원번호: 제41-2013-0035995

['파육장'은 육개장의 맛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고객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육개장 브랜드입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재무재표기준)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496,441	2,667,935	1,828,506	3,319,470	126,880	86,740
2022년	4,421,556	2,472,253	1,949,303	4,181,240	168,429	120,796
2023년	4,884,203	2,776,938	2,107,264	4,284,221	261,720	157,961

그 근거자료는 첨부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100%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이 영 찬	대표이사	1999.6.~현재	대표 이사	사업 총괄
	이 채 원	이사	1999.6.~현재	이사	기획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용마을	가맹사업 경영	2008.8~현재	용우동 가맹사업 (등록번호 20080100233)
가맹본부	㈜용마을	가맹사업 경영	2017.6~2019.2	분식발전소 가맹사업 (가맹사업중단으로 등록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파육장 (상표권)	서비스표	출원일: 2013.09.13 등록일: 2014.07.15	출원 제41-2013-0035995 등록번호 4102939380000	(주)용마을	2024.07.1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 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파육장]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3년 10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3.10.10.)

2. 〔파육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용마을	파육장	이영찬	1999.6.1～현재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빌딩 비동 701호

3. 〔파육장〕 업종

영업표지	업종	
파육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육개장, 설렁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파육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시점	합계	가맹점	직영점
2021년 12월 31일	4	4	0
2022년 12월 31일	6	6	0
2023년 12월 31일	5	5	0

지역	2021.12. 31			2022.12. 31			2023.12. 31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4	4	-	6	6	-	5	5	-
서울	0	0	-	0	0	-	0	0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4	4	0	6	6	0	5	5	0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세종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파육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	0	1	-	0	4
2022	4	2	0	-	0	6
2023	6	0	1	-	1	5

[파육장]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첨부2 (2023.12.31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현황)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파육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파육장]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①	가맹점/직영점의 수②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용마을	용우동	20080100233	한,분식	182/0	182/0	171/0
		분식발전소 (2019.2월 가맹사업종료)	20170763	분식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파육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5	331,110	9,307	552,389	12,316	119,840	4,822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5	331,110	9,307	552,389	12,316	119,840	4,822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⑧(7)]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 매출액은 공산품을 제외한 물품 공급액의 6 ~ 8 배 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파육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파육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①	평균 영업기간②
2023년 말	5	2679일(약 7년)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파육장]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0]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0	0	0	
광고	소계		0	0	0	
	(비공개)		0	0	0	
	(비공개)		0	0	0	
	(비공개)		0	0	0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강서우체국 금융팀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81번지	02-3663-152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

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파육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0				
입회비	8,8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년중 잔여기간분의 입회비를 반환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보증금	1,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물품대 미수금 발생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여금을 반환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2,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2,000
가입비	8,800
교육비	2,200
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첨부3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5,800 ~ 89,8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주)용마을	39,600	2,64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49.5㎡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800천원 추가부담
주방기기/ 집기비용	(주)용마을	24,200	1,210	오픈 7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49.5㎡ 기준 면적 증가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기타 공사	(주)용마을	8,000 ~ 20,0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의탁자, 전기증설, 냉, 난방기, 외부, 기타 공사 (현장상황, 면적에 따라 상이)
초도 식자재 비용	(주)용마을	3,000 ~ 4,000		오픈 당일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예상매출에 따라 상이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주)용마을	1,000 ~ 2,000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소모품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 200천원을 당사에 공사시작 이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매장개발부 (전화:02-2671-447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합니다. 새로운 입지를 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희망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경영 능력이 있고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사 자격증 소유를 권장함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서비스 또는 조리 능력이 있고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파육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3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1)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영업중의 부담금 (로열티, 상표사용료, 관

리비 명목의 부담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0	-	-	-	-
리스료	해당없음	0	-	-	-	-
광고 분담금	해당없음	0	-	-	-	-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0	-	-	-	-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0	-	-	-	-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0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0	-	-	-	-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0	-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점사업자가 교체 및 보수함	0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자	가맹본부 분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0	-	-	-	-
지연 이자	(주)용마을	연 20%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물품대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POS 사용료	(비공개)	매월 38,500원	가맹계약 종료시까지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의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물류비, 인건비, 배송비등의 지출비용은 차감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3년 말 기준 5개점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 등의 업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와의 가맹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당사에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위반기일 1일당 본 계약서상의 매장평수에 금20,000원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4)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파육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당사에 6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당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위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파육장]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 부담금 650만원의 내역은 가맹비 550만원(가입비 440만원, 교육비 110만원>, 보증금 100만원입니다.
단, 당사와 귀하와의 최초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수받는 자는 가입비는 전액 면제되고 교육비 110만원 및 보증금 100만원, 합계 210만원을 부담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파육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 중 강제거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제품 품질의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 중 권유거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제품 품질의 적합성을 확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품질의 적합성이 미흡하여 당사의 기업 이미지 또는 당사의 음식 맛의 고유성이 실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소비자 기호,계절의 변화 등으로 신메뉴 소스를 추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또는 신메뉴에 맞도록 새로운 그릇 용기 등을 추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시장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상품.용역의 공급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위 품목은 2023년 가격변동이 없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파육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파육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2) 당사가[파육장]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육개장,육칼국수 등 표준 메뉴 (첨부4: 표준메뉴 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②	가격 통보 방법	비고③
육개장,육칼국수 등 메뉴 (첨부4. 표준 메뉴 및 권장 가격 리스트 참조)	육개장,육칼국수 등 권장 가격 (첨부4. 표준 메뉴 및 권장 가격 리스트 참조)	메뉴판에 공지	2023.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육개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파육장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인근 3천세대 이상 상권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파육

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파육장]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기타 영업지역에 관한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3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②
2023	100%	해당없음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파육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1)항
2.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2)항
3.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3)항
4.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4)항
5.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5)항
6.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당사의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6)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1)항
2.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2)항
3.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3)항
4.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4)항
5.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5)항
6.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당사가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당사의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의 (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 표는 2020년 4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일괄 수정한 것으로, 가맹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가맹점운영권을 당사가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시장조사팀 (02-2671-4470)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새로운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가입비의 일부가 면제되며, 교육비(110만원)와 보증금(100만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입비 일부 면제의 범위는 최초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경우 완전 면제, 최초계약일로부터 6개월이후의 경우 가입비 1,000만원(부가세별도)중 500만원(부가세별도)이 면제됩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서면 통지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당사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위탁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파육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식사류를 판매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정도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팀 (02-2671-447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파육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10:00 ~ 23:00 (13시간)을 권장합니다. 상권에 따라 연장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관혼상제나 정기휴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으로 3일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문의: 영업팀 (02-2671-44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

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종업원 수는 매장의 크기 및 매출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매장의 크기 및 매출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매장에 직접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그러나,경영 효율을 위하여 매장에 직접 근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파육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전액	없음	절차 없음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없음	전액	별도 절차 없음	특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당사 시스템과 혼동될 수 있는 영업표지(간판 포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그 위반기간 1일당 본 계약서상의 매장평수에 금 20,000원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계약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실평수 99m^2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①	소요비용②
합계		50일 내외	9p~11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9~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0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4(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계약의 해석이나 효력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쌍방 합의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최종 해결은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③	지급절차④	비용부담 제외사유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1차 : 창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없음

4.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슈퍼바이저 집중 관리 및 점포매출향상 프로젝트 시행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파육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파육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7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없음	없음	필요시에만 실시함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③

첨부1 최근 3개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첨부2 2023년 12월 31일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현황
첨부3 가맹점을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물품의품목
첨부4 파육장 표준 메뉴 및 표준 가격 리스트
첨부5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물품 표준 리스트
첨부6 '파육장' 표준 식자재 리스트
첨부7 일반 소모품 리스트

첨부1 바로 전 3개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원본 대조필)

* 2023년 12월말 영업중인 가맹점 리스트 (5개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3년 신규오픈 매장리스트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폐점 매장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3년 인수인계 매장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첨부3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

☆ 아래표 내용일체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기구, 집기류는 신메뉴 개발, 시장 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4 파육장 표준 메뉴 및 표준 가격 리스트

메뉴 명	권장가격
파육장	9,500
사골육개장	9,000
육개장칼국수	9,500
왕돈까스	10,000
왕만두	5,000
왕만두국	8,000
냉면	7,000
비빔냉면	7,000
불고기짜글이	9,000

* 위 표의 메뉴명,가격,가격 통보 방법 등은 신메뉴 개발,시장 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5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물품 표준 리스트

✰ 아래표 내용일체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위 리스트의 품목,사이즈,규격 등은 2023.12.31일 기준이며 설계변경,시장 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6 ‘파육장’ 표준 식자재 리스트

✰ 아래표 내용일체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리스트의 품명,규격은 2023.12.31일 기준이며,신메뉴 개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7 일반 소모품 리스트

✰ 아래표 내용일체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리스트의 품목은 2023.12.31.일 기준이며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위 품목을 표준 공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나, '파육장' 상호 및 로고가 부착된 품목은 '파육장' 상호 이미지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시장조사팀(02-2671-447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 (help@franchise.ftc. 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파육장.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